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Allocation Criterion of the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to Adult Children Among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배희선
부교수 최현자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Hee Seon Bae
Associate Professor : Hyuncha Choe

▣ 목 차

I. 서론	IV. 분석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인 틀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llocation criteria types in transferring economic resources to adult children from the adult-childhood of children to parent's death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ean of allocation criterion of exchange was the highest, the next was the criterion of compensation, and the criterion related birth factors was the lowest.
- 2) Allocation criteria dimensions of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composed of compensation, exchange, and birth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4 types: ① the type that parents transfer to compensate economic status of children, ② the type that parents transfer more resources to children who take more care of their parents, ③ the type that parents transfer more resources to primogeniture or sons, ④ the mixed type that uses the exchange criterion, the compensation criterion, and the criterion related birth factors.
- 3) The variables which have significance on the types of allocation criteria were age, the number of children, and marital statu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saving products development, and the law to motivate care of parents.

주제어(Key Words): 중노년기 가계(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경제적 자원이전(the economic resources transfers)

* 본 연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 론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투자나 직접적인 물적 자원의 증가로 이어져 각 자녀의 경제적 복지수준과 직결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들은 일정한 분배기준에 따라 자녀들에게 대학교육비나 결혼·주택비용을 포함한 증여의 형태로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박재간, 1990). 반면에 노부모 부양은 경로효친 사상에 근거한 미덕으로 간주되어 자녀는 부모에 있어 노후의 경제적·신체적 의존수단이 되어 왔다(김기덕·손병돈, 1995).

그러나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약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성인 자녀들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한 비용부담과 자녀로부터의 혜택이라는 양면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박명희·정주원, 2000) 노인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자원이전의 자녀들간 분배기준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규범을 보존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 자녀에 대해 상속세와 소득세 감면정책 및 효도상속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들도 추진 중에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년기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노년기를 맞게 될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도 중요하며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경제적 자원이전의 자녀들간 분배기준은 자녀의 경제적 지위 및 가족관계의 질 뿐 아니라 노부모 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계재무 영역에서는 재무관리 프로그램과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사용행동에 초점을 두어 저축, 신용, 보험, 화폐관리행동 및 은퇴행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을 포함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농촌가계 중심의 실태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최근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몇 편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자녀에 대한 분배기준은 자원이전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출생순위나 성별에 의해 분배규모가 결정되며, 이를 상세하게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배종열, 1997; 김기경·박혜인, 2001).

서구에서 연구되어 온 분배기준을 설명하는 이론은 자녀들의 부의 균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물질적인 이전을 더 많이 한다는 보상적 분배기준 이론(Behrman, Polla, & Taubman, 1982; Tomes, 1981; Becker & Tomes, 1979; Becker, 1974)과 자녀로부터 받은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교환적 분배기준 이론(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으로 대별된다. 따라서 세대간 이전에 의해 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는 달리 각 가계의 보상적 기준에 의한 이전은 부의 균등화로 인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실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자상속과 남아선후사상 등과 같이 서구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출생관련 요인이 중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족과 높은 저축률 등과 같은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분배기준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서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보상적 기준과 교환적 기준에 대한 연구들은 소득재분배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금 요율체계 및 감세효과 등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시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 분배기준의 척도에 대한 정교함이 부족하고 각 기준에 대한 단일 선택만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각 분배기준들에 대한 정교한 척도를 구성하여 이를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와 중년기에 처한 도시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들을 알아내고, 분배기준의 선택에 따라 분배기준을 유형화하고, 분배기준 유형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힘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분배기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장기 재무계획과 재산상속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재무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배기준과 관련하여 노부모 부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전의 분배기준은 부모자신과 자녀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국민 경제적 차원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관련되므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근로소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산소득의 편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분배상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지적되고(김승학, 1991), 이는 경제적 지원의 세대간 이전이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상적 분배기준에 의한 세대간 경제적 지원이 전은 소득의 균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분배기준에 대한 각 가계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는 소득재분배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인 틀

1.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전의 개념과 범위

경제적 지원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유형한 것으로 크게 소득과 부로 구분된다. 소비에 지출하고 남은 유량소득은 부의 원천으로서 저장이 될 수 있으며, 부는 순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성되고 흔히 재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전소득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수혜(government transfer)와 같은 공적 이전이 있으며, 사적 이전은

개인간 혹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이전(interfamily transfer, informal transfer)으로 특별한 반대급부나 수혜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김기덕·손병돈, 1995).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전의 범위는 자녀의 성인기 시작부터 지출되는 주요 비목의 비용부담에서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지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지원까지를 포함하며, 경제적 지원이전은 크게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된다. 현행법에서 상속이란 기부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만을 뜻하며(이희배, 1996), 증여란 기부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경제적 지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생전상속과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전의 흐름을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전이란 부모의 사후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지원의 양으로 규정한 상속액과 부모의 死前에 지출되는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택비용, 그리고 이 비용 외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다양한 형태의 증여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경제적 지원이전의 분배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보상적 기준

보상적 기준이란 Becker의 이타주의에 입각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전을 의미한다. 이타주의란 타인의 복지 증기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은 이타적인 경제적 지원의 이전 행위의 배경을 설명한다. 문화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타적인 경제적 지원이전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타적인 경제적 지원이전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은 인간들의 사회상호작용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사회학 및 인류학을 통합한 Becker(1974)로부터

터 출발하여 발전되었다. Becker(1981)는 시장행동의 일차적 목적은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며, 가족행동을 설명하는데는 적합치 못한 점에 착안하여 이타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타주의가 시장에서보다 가족 내에서 활발한 것은 가족 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이타적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이전을 많이 하는 이유도 효율성으로 설명하였다. 즉 자녀는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가 부모보다 더 많고, 그들의 부모만큼 많은 인적자본을 축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해 인적·물적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투자수익이 더 높아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Becker의 자녀에 대한 이타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녀는 자신의 소비만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므로 이기적인 반면에 부모는 자신의 소비와 자녀의 효용을 통해서 만족을 극대화하므로 이타적으로 본다.

둘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타적인 부모는 수혜자인 자녀의 소득을 증진시키도록 도모하거나 자녀의 소득감소를 방지하는 행동을 취한다. 또한 이타적인 부모는 자녀의 소득을 낮추게 되는 행동이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행동이라도 이를 삼갈 뿐 아니라 자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자신의 소득을 낮추는 행동이라도 취하게 된다.

셋째, 매우 이기적인 자녀라도 이타적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자신가족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녀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된 자신의 소득 증가분보다 그 행동으로 발생된 가족소득의 감소가 크면 이기적인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복지를 침해한다 해도 이기적인 자녀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소득 증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타적인 가족 내에 있는 이기주의자는 비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Becker의 이타주의에 입각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재능과 같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녀에게 더 많은 비인적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이타적 부모의 효용은 자신의 소비뿐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모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희생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수준이 낮다고 예상되는 자녀들의 수준을 보상해 주어 자녀간 경제적 지위의 균등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Tomes(1981)와 Behrman 외(1982)의 연구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경험적 모델을 제시한 Tomes(1981)의 경우, 부모는 부모의 총소비, 자녀수, 자녀 일인당 소비수준을 통해서 만족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의 타고난 능력이나 인적자본 투자 비용에 의해 발생된 자녀소득의 차이에 대해 부모는 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인적 자본 투자와 상속된 물질적 부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자녀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Becker(1981)의 이타주의 이론이 지지되었다. 또한 남자쌍둥이 자녀가계를 대상으로 한 Behrman 외(1982)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의 불균등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소득획득 능력(earnings potentials)이 낮은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타주의에 입각한 가족내의 경제적 자원 이전은 세대간 경제적 불평등의 전이(transmission)가 일반적으로 적게 상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자녀에 대해 보상적인 형태의 분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상속이 다음세대의 경제적 균등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ernheim 외(1985)는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순수한 이타적인 부모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교환적 분배기준의 성립을 제시하였다.

2) 교환적 기준

세대간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전략적 차원의 교환적 분배기준을 제시한 Bernheim 외(1985)는 이타주의에 입각한 보상적 기준에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효과적인 이타적 부모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모는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원하며,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적 지원이전을 원하는 경향을 띤다고 가정하였다.

Becker(1981)의 이론은 이타적인 부모가 자녀를 위한 재산분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해도 효용이 극대화되므로 자동적인 경제적 지원이전을 통해서 자녀의 최적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략적인 반면에 Bernheim 외(1985)의 교환적 분배기준은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유도하기 위해 재산분배 규칙을 세움으로써 조작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상적 기준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전은 파레토 균형¹⁾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전략을 통해서 균형점에 도달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환적 분배기준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자녀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부모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특정자녀가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다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이전할 가능성을 제시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 사용의 효율적인 대체안을 보임으로써 특정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보다 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Bernheim 외(1985)의 연구 결과에서도 두 자녀 이상의 가계에서만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빈도가 자녀에 대해 유산상속이 가능한 자산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자녀가 한 명인 가계에서는 접촉빈도와 유산상속이 가능한 자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에만 교환적 기준에 의해 자녀의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과 소득은 자녀의 서비스 공급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적고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덜 받는 반면, 상속이 가능한 자산이 많으면서 병중인 부모들은 자녀의 관심과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분배기준이 자녀의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한 것이다.

Bernheim 외(1985)는 Becker(1974, 1981)의 이타주의 이론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부자들의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주로 이전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타적으로 자녀에 대해 이전한다면 자녀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미국의 세법상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증여를 택하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전은 사후상속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자녀의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상속을 약속하여 죽음의 시기까지 권리자원을 보유한다고 봄으로써 교환적 분배기준을 지지하였다.

Cox(1987)는 사적 이전소득(private transfers between living persons)의 자료를 사용하여 교환적 분배기준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령자들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많을수록 이전을 받는 확률과 이전액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세대 가계보다는 자녀가족과 동거하는 2세대 가족의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이전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타주의에 입각한 보상적 기준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2세대 가족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교환적 분배기준에 의한 이전이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녀서비스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매우

1) 파레토 균형이란 가장 효율적인 지원의 배분 상태, 즉 지원의 배분 상태가 더 이상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만일 두 사람에게 두 가지의 재화를 배분한다고 가정할 때 교환을 통해 상호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상태를 파레토 균형, 또는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이준구, 1993).

비탄력적인 이유는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비용이 많이 들어 접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들이 기관이나 시설의 서비스를 선호하지 않으므로 기관 서비스는 자녀의 서비스에 대해 열등한 대체제(poor substitutes)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생전에 행해지는 사적이전소득은 상속보다 자녀의 서비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제시하였다. <표 1>은 두 이론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이론에 의해 제기된 보상적 분배기준과 교환적 분배기준의 선별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제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연구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기준의 연구는 수혜자인 자녀들의 교육수준 및 자산수준과 부모로부터 받은 수령액과의 관계가 정적인지 부적인지에 따라 보상적 분배기준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보상적 기준의 성립여부는 자녀들의 소득 및 자산이 이전받을 확률과 이전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응력, 직업 안정성, 신체적 결함과 같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여타의 조건도 포함시켜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정교하게 접근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자녀에 대한 이전액 및 이전확률과의 관계를 통해 경제적 자원의 교환적 분배기준을 조사하였다. 거시 자료의 이용으로 인하여 이전에 대한 정보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접촉빈도와 같은 단순한 관계를 통해 부모에게 제공된 서비스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 척도보다는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정교한 차원에서 경제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은 크게 노년기의 부모에게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정도를 말하는 경제적 부양 측면과, 노인의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정서적 부양 측면,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인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의 시중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적 부양 측면이 있다(서병숙, 1991). 따라서 부모들의 교환적 분배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부양 영역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학적인 접근법에 의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은 보상적 또는 교환적 기준간의 단일 선택안 만이 제시되었다.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단일적인, 즉 상호 배타적인 선택안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기준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나 두 가지 기준에 대해 가계가 복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가족형태 면에서 핵가족화가 정착되고 노인들의 경제적·주거적 자립이 강조되는 등 의식면에서 상당히 서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 실태는 여전히 유교적인 관념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서 서구사회보다는 수직적인 편이다(조정문, 1991). 또한 서구사회보다 훨씬 더 세대간 경제적 이전이 빈번하며 규모도 크다.

우리 나라의 중심적 분배기준을 재산상속과 연관된 가족제도 관련문헌(한남제, 1989)과 선행연구(이동훈, 1980; 김종호, 1985)를 통해 종합하면 <표 2>에

<표 1>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별 특성

적용방식 \ 기준	보상적 분배기준	교환적 분배기준
기준내용	• 자녀의 소득, 자산 또는 교육수준, 신체적 능력과 반비례	• 부모에게 제공된 자녀의 서비스에 비례
효용극대화	• 자동적으로 일어나므로 비전략적임	• 계획 또는 조작이 필요하므로 전략적임
이전시기	• 상속보다 중여형태로 이전	• 중여보다 상속형태로 이전
자녀수	• 자녀수에 상관 없음	• 이전 대체안이 있어야 하므로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출생순위나 성별에 의해 경제적 지원이전이 결정되는 출생관련 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남우월 딸차별주의가 대표적이어서 법적으로도 장남의 상속분이 가장 많은 편이었고, 결혼한 자녀는 출가외인이라 하여 재산상 속분이 타 자녀보다 적게 규정되어 있었으며(이희배, 1989), 가계의 실질적인 분배기준도 법적인 규정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남녀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198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가족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법정상속의 경우 아들과 딸의 경우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과 최근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부양의식의 변화 및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분배기준도 상당히 변화되었으리라고 예상되나 1980년대 이후 가계의 분배기준 선택의 경향은 자원이전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 소수의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연구결과 면에서도 출생관련 기준이 여전히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몇 가지 기준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부모의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향이 강하여 자녀들의 교육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의 증대를 위해서도 부모들은 인적·비인적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이다(양해경, 1993; 이민표, 1994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자녀간 조건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보상적 분배기준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우세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준보다는 출생 순위와 성별에 의해 장남이나 아들이 타 자녀보다 경제적 지원을 많이 이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 보면 이는 장남이나 아들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와 부모 및 타 가

족원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기 때문이다(한남제, 198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중심적 분배기준으로 나타난 출생관련 기준은 교환적 기준과 복합되어 있을 수 있다. 최근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장남 또는 아들이나(박명희·정주원, 2000; 김기경·박혜인, 2001), 부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녀에게(문영소·김양희, 1999) 더 많은 지원을 이전하려고 하며 우대분배를 한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하려는 기대감에 대한 경향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상적 기준, 교환적 기준, 출생관련 기준에 대한 정교한 척도를 구성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3. 경제적 지원이전의 분배기준의 관련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1) 부모의 연령

국내의 선행연구(이동훈, 1980; 김기경·박혜인, 2001)에 따르면, 연령이 많을수록 유교적 사고관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가문의 전통을 잊게 하고, 부모 및 다른 가족원의 부양책임 소재를 장남이나 아들들에게 이동시키는 경향이 더 높았다. 따라서 분배기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교관과 보수적인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장남/장녀 또는 아들이라는 점을 중시하는 출생관련 요인을 중시할 성향이 높다. 그러나 노령층은 중년층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 독립 정도가 낮은 편이므로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이전하는 교환적 분배기준도 우세할 수도 있다.

2) 자녀수

교환적 분배기준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표 2> 출생관련 분배기준

(단위: %)

사 항	장남 단독 상속	장남 우월 상속	중자 우월 상속	남녀 고르게	기타
비 율	24.2	37.1	25.7	2.9	10.1

에만 전략이 적용 가능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생활 유지,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적 자원이전액에 대한 경쟁때문에 경제적 자원이전 약속을 통해서 자녀의 서비스를 포함한 행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반면에 보상적 분배기준에 의하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자산 또는 소득, 재능,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조건이 가장 열악한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질 경향이 높을 수 있다.

3)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 중 다른 한 배우자의 생존이나 사별과 같은 결혼상태에 따라 소득 및 자산수준이 변화되고 자녀에게 기대하는 노후의 경제적 의존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분배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외로움을 달래고 사회적 감정교류(socio-emotional rewards)를 위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도움 주고받기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Mutran & Reitzes, 1984). 우리 나라에서는 배우자중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쪽이 경제력을 여전히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의 절반은 70세 정도에 남편과 사별하며 자녀들은 결혼하여 집을 떠난 상태이므로 남편과의 사별은 생계수단의 상실을 초래하여 경제문제를 일으키거나(서병숙, 1991),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남편과 사별하였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경향이 높으며, 대개 부모의 부양책임은 자녀들의 출생서열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편이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보다 무배우자가계인 경우에 보상적 기준보다 출생관련 기준이나 교환적 기준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경·박혜인(2001)의 연구에서도 무배우자가계의 경우 장남우대 경향이 있으며, 문영소·김양희(1999)의 연구에서는 우대하는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하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구성

자녀구성은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의 남아선호사상이며, 이는 유교적인 배경에 깊이 뿐리박고 있다. 과거에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가계의 계승과 노후의 경제적 및 심리적 의존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한남제, 1989). 혈통, 재산, 제사 등이 모두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되는 부계 가족제도에서 가계 계승자로서의 아들이 필요했고, 노후대비가 불충분한 물물경제 시대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며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상은 많이 약화되어 왔으나(윤종주, 1974; 이동원, 1977; 한남제, 1989, 재인용), 아들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의식이 없어진데 비하여 재산상속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편이다. 따라서 자녀구성이 딸들로만 구성된 가계는 아들들로만 또는 아들딸이 혼합된 가계와는 달리 노후의존 대상이 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노후대비 방법 등이 달라질 것이며, 이는 다시 자녀들에 대한 분배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5) 자산과 소득

국외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Bernheim 외(1985)의 전략적 유산 상속동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상속가능한 자산 보유량 증가는 구매 가능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관심(서비스)과 서비스의 양, 즉 자녀가 제공한 접촉빈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서비스의 재정적 동기(fianacial motivation)인 교환적 분배기준이 지지되었다. 반면에 Cox(1987)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사적소득이전(vivos inter transfer)을 통해 자원이전의 4/5가 이뤄진다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분배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교환적 분배기준을 선택하고 있음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분배기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일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6) 이전시기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적 분배기준에 따르면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하고(Behrman 외, 1982; Tomes, 1981; Becker & Tomes, 1979; Becker, 1974), 자녀로부터 받은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교환적 분배기준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력자원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상속의 형태를 취한다(Bernheim 외, 1985).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맏자녀가 성인 시기인 중년후반기부터 막내자녀의 결혼과 독립이 이뤄지는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년후반기부터 노년기에 해당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들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보상적, 교환적 및 출생관련 기준과 이 외에도 다른 기준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 가지 다른 분배기준이 예비조사에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사례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상적, 교환적 및 출생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 이전에 있어 분배기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분배기준은 어떻게 유형화되며, 각 유형별로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전시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사회경제적 특성은 부모의 연령, 자녀수, 부모의 결혼상태, 자녀구성, 자산, 소득을 포함시켰다. 이전시기는 부모 생전에 경제적 자원을 모두 이전하려는 증여와 부모의 사망후에 모두 이전하려는 상속, 그리고 증여와 상속의 혼합형태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① 보상적 기준 : 보상적 기준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때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보상하려는 방식의 자녀간 분배기준을 말한다. 보상적 기준을 검증한 선행연구(Becker, 1974, 1979; Tomes, 1981)에서 제시된 자산, 소득,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자녀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녀, 사회적응력이 낮은 자녀 및 직장이 불안정한 자녀와 같이 열악한 조건을 가진 자녀에 대해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이전하려는 기준의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② 교환적 기준 : 부모의 노후를 보필하는 자녀의 부양행동과 관련된 자녀간 분배기준으로 출생관련 조건이나 자녀의 경제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적 부양정도가 많은 자녀에게 부양정도에 비례하여 경제적 자원이전의 규모에 차이를 두는 기준을 말한다. 부모의 노후를 보필하는 자녀의 부양행동과 관련된 자녀간 분배기준으로 자녀가 제공하는 부양은 서병숙(1991)과 이윤정(1994)의 노부모 부양기준을 중심으로 노년기의 부모에게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정도에 따른 경제적 부양, 노인의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정서적 부양,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인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의 시중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적 부양으로 구분하여, 각 부양 정도에 의거한 이전액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환적 분배기준은 부모가 자녀들의 부양행동을 제공

받기 위해 경제적 자원이전을 약속함으로서 전략적으로 자녀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므로 자녀가 한 명만 있는 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조사대상자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③ 출생관련 기준 : 자녀의 경제적 지위나, 부모에 대한 부양정도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출생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이전하는 기준을 말한다. 자녀의 경제적 지위나, 부모에 대한 부양정도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출생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이전하는 기준을 말한다. 재산상속에 관한 이동훈(1980)과 홍영립(1997)의 국내 연구를 참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장남단독 또는 장남, 아들, 장녀라는 점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게 되는 기준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대해 각 4문항씩의 질문을 작성하였고,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범주화하였다. 각 범주에 대해 1점씩 부여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각 기준의 점수를 구하였으며 각 분배기준의 점수는 4점에서 20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각 기준에 대한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보상적, 교환적, 출생관련기준 척도의 문항은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8872, .8608, .9357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배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작성한 질문들이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되는지, 또 각 문항들이 각 해당차원의 문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은 세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세 요인의 고유치가 모두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에 묶여진 문항은 보상적 분배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전체 분산의 25.1%를 설명하고, 요인 2에 묶여진 문항은 교환적 분배기준으로 23.6%를, 요인 3은 출생관련 기준으로 2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연구함에 있어 소득원 및 자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보다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도시가계를 선택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현재의 노령계층과 다음 세대에 노년기를 맞게 될 중년후반기 가계를 선택하였으며, 교환이론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계로 제한하였다.

조사대상의 표집 방법은 첫 단계로 서울시와 서울근교의 신도시에 거주하는 중년후반기와 노년기 가계 중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계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중년후반기 가계와 노년기 가계를 각각 비슷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일보의 '부동산 시세표(1997)'에 근거하여 자산과 소득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절히 구분하여 연구목적에 맞도록 의도적 표집을 통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고, 질문지 문항을 정선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년기 후반기와 노년기 부모의 자산과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표집한 표본가계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중년 후반기 가계는 서울시에 소재한 7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통해 부모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면접요원들이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총 8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거부로 인한 손실률이 매우 높아 총 53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자산 수준이 다른 표본과 격차가 심해 결과의 편의가능성을 내포한 30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를 제외시켰다. 부적절한 조사대상이 표집된 경우와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476부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PC⁺와 SA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부모들의 성인 자녀에 대한 분배기준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지원이전의 분배기준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DMR-test를 사용하였고 유형별 표본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되었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경제적 지원이전의 분배기준의 경향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이전시 각 자녀에게 이전되는 분배기준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분배기준은 응답문항에 대한 점수의 총합을 가지고 13~20점인 경우는 상, 9~12점인 경우는 중, 그리고 9점 미만인 경우를 하로 구분하였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간 경제적 지원이전에 있어 보상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주장과 교환적 기준이 적용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도 가계가 다양한 분배기준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는 장남/아들 중시경향과 같은 출생순위나 성별에 따른 특정 선호대상으로 인하여 분배기준의 형태가 서구 연구에서 제시된 보상적 기준이나 교환적 기준과는 다른 출생관련 기준이

2. 분배기준의 유형화

1) 유형화 및 각 유형의 특성

본 절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전에 있어서 자녀간 분배기준에 대한 서구와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분배기준을 보상적 기준, 교환적 기준, 출생관련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분배기준을 유형화하기 위해 보상적, 교환적 및 출생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형화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집단의 수를 내용상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로 하여 각 유형의 빈도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상적, 교환적 및 출생관련 기준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의 수는 4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네 가지 유형을 각각 복합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 출생관련 기준형으로 명명하였고, 각 유형별로 보상적 기준, 교환적 기준, 출생관련 기준점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군집분석을 통하여 네 개 집단으로 구분된 각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별로

<표 3> 분배기준의 분포 및 평균, 표준편차, 범위

변수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범위
보상적 기준	상	273	58.2			
	중	87	18.6			
	하	109	23.2			
		469	100			
교환적 기준	상	316	67.7			
	중	81	17.3			
	하	70	15.0			
		467	100			
출생관련 기준	상	99	21.1			
	중	74	15.8			
	하	296	63.1			
		469	100			

<표 4> 유형별 각 분배기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차원	유형(빈도)	평균	표준편차
보상적 기준	유형1 (96)	15.39	3.55
	유형2 (199)	11.65	4.37
	유형3 (129)	13.72	5.06
	유형4 (41)	8.09	4.29
	계 (465)	12.68	
교환적 기준	유형1 (96)	16.07	2.57
	유형2 (199)	15.74	2.62
	유형3 (129)	10.34	4.03
	유형4 (41)	7.90	3.37
	계 (465)	13.62	
출생관련 기준	유형1 (96)	13.61	3.46
	유형2 (199)	6.29	2.83
	유형3 (129)	5.72	2.17
	유형4 (41)	15.00	2.83
	계 (465)	8.41	

네 개의 표준화된 점수와 DMR-test 결과를 기초로 집단간 점수순위로 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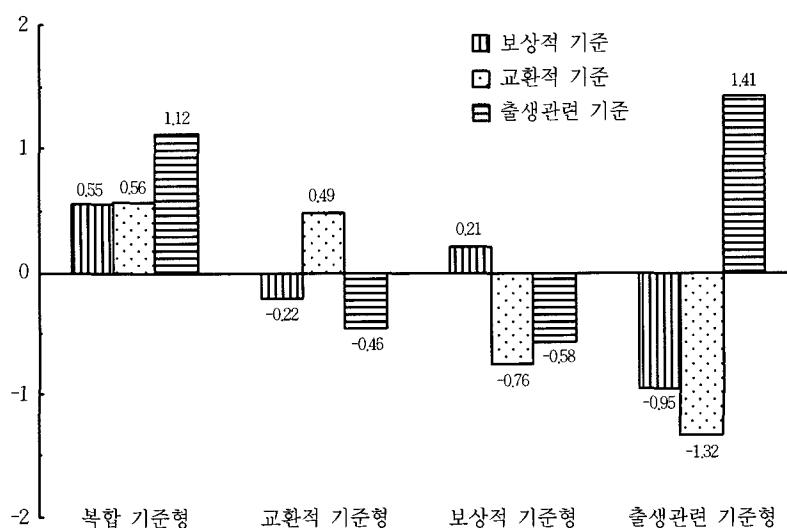
첫 번째 유형(++)은 분배기준의 하위차원의

<표 5> 유형별 각 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와 집단간 순위

	복합 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	출생관련 기준형
점수부호	(+ + +)	(- + -)	(+ - -)	(- - +)
보상적 기준	.5504 1	-.2208 3	.2068 2	-.9536 4
교환적 기준	.5649 1	.4890 1	-.7569 3	-.13193 4
출생관련 기준	1.1154 1	-.4553 3	-.5788 3	1.4128 1

표준화된 점수가 보상적 기준, 교환적 기준, 출생관련 기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복합 기준형의 형태를 띤다. 이 유형에 속한 부모들은 성인 자녀들에 대해 경제적 지위가 열등한 조건의 자녀에게 다른 자녀보다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이전해주려고 하며, 동시에 노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에게도 역시 더 많은 자원을 이전하고자 한다. 특히 출생관련 기준을 다른 두 기준보다 더 중요시하여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어 더 많은 자원을 이전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보상적 기준의 점수가 음의



<그림 1> 유형별 하위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의 막대그래프

값을, 교환적 기준은 양의 값을, 출생관련 기준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교환적 기준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은 교환적 분배기준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고 다른 두 기준의 선택수준이 비교적 낮은 집단이다. 경제적 지원이전시 출생관련 요인을 비교적 무시하므로 보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보다는 부모의 노후책임을 경제적 지원이전의 분배기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부모자신의 노후를 우선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복합 기준형의 교환적 분배기준의 수준만큼 높지는 않다.

세 번째 유형(++)은 세 가지 하위차원 중에서 자녀들의 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그리고 사회적응력과 같은 자녀들의 조건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보상적 기준이 양의 값을 가지며, 자녀들의 부양책임 및 출생관련 요인들을 고려하는 교환적 기준과 출생관련 기준은 음의 값을 갖는 유형이므로 보상적 기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이타적인 부모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한 부모의 보상적 기준은 복합 기준형에서 나타난 보상적 기준 점수보다 낮은 편이다.

네 번째 유형은(--) 출생관련 기준은 양의 값을, 보상적 기준과 교환적 기준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자녀의 조건이나 부모의 노후책임을 맡는 자녀에 대한 고려보다는 출생관련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므로 출생관련 기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네 유형 중에서 출생관련 기준점수는 가장 높은 반면에, 보상적, 교환적 분배기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기준 선택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분배기준의 수준을 갖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와 국내선행연구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간 우리 나라의 경우 출생관련 기준에 의거한 분배기준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출생관련 기준 외에도 보상적 기준과 교환적 기준이 중요한 분배기준이 되고 있으며,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2장에서 제시된 서구의 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점

은 분배기준에 대한 단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출생관련 기준과 함께 보상적, 교환적 분배 기준들이 복수적으로 선택된다는 점이다. 복합형인 유형 1에서 보상적, 교환적 분배기준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출생 관련 기준 점수도 유형4 다음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후부양소재가 장남/아들에게 가장 많이 있다고 보는 시각과(이가옥, 1994), 상속/증여 연구에서 나타난 장남/아들 우위의 분배기준과, 자녀에 대한 강한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들간의 경제적 차이를 균등화하고자 하는 우리 부모들의 특성을 잘 반영해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분배 기준에 대한 연구는 단일 안에 대한 선택여부에 두는 것보다는 각 기준간의 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분배기준 유형별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보상적 분배기준, 교환적 분배기준, 출생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분배기준의 유형화를 한 결과,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는 네 집단으로 유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각 유형별로 부모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자 일원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과 같다.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 자녀수, 결혼상태였으며, 자녀구성, 경제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전시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연령에 있어서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유형들간의 차이도 세분되어 나타났다. 출생 관련 기준형은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고, 복합 기준형, 교환적 기준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연령이 낮은 집단은 보상적 기준형으로 나타났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유교적 사고관의 영향으로 부모 및 다른 가족원의 부양책임 소재를 장남이나 아들들에게 이동시키는 대신 장남/아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자녀의 출생관련 요인이 경제적 지원이전에 중요한 분배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머

〈표 6〉 분배기준 유형별 관련변수의 일원분산분석

빈도	복합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	출생관련 기준형	F값
	96	199	129	41	
연령(세)	58.04 a (8.58)	57.03 b (8.58)	56.12 c (7.79)	65.34 d (10.51)	12.903***
자녀수(명)	3.12 a (0.98)	3.10 b (1.10)	3.02 c (1.12)	3.78 d (1.44)	5.004**
자산(백만원)	486.66 (689.10)	426.87 (532.81)	414.67 (640.32)	664.51 (1771.90)	.257
소득(만원)	369.29 (445.30)	437.77 (615.98)	354.37 (489.85)	357.72 (767.92)	2.672

*p< .05 **p< .01 ***p< .001

〈표 7〉 분배기준 유형별 관련변수에 대한 교차분석(%)

계	복합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	출생관련 기준형	계	χ^2
	20.6	42.9	27.8	8.8	457(100)	
결혼 상태	유 배우자가계 무 배우자가계	92.6 7.4	86.2 13.8	84.3 15.7	70.0 30.0	85.7 14.3
자녀구성	아들가계 딸가계 아들+딸가계	14.6 6.3 79.2	10.6 14.6 74.9	15.5 20.9 63.6	9.8 4.9 85.4	12.7 13.8 73.5
이전시기	사전증여 혼합형 사후상속	16.8 52.6 30.5	26.2 49.2 24.6	20.0 52.5 27.5	16.7 47.0 36.4	19.6 49.2 31.2

*p< .05 **p< .01 ***p< .001

지 세 유형들간의 평균연령차이는 출생관련 기준형과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았다. 따라서 평균 연령이 낮아질수록 출생관련 기준형, 복합적 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출생관련 기준에 대한 기준이 감소되고, 교환적 기준과 보상적 기준에 대한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케 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자녀수는 연령에서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출생 관련 기준형은 자녀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복합 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과 자녀수의 단순상관관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온 연구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

서 교환적 기준형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가 다른 유형에서보다 많이 기대되었으나 이와 같은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고 추측된다.

셋째, 결혼상태에 따라 각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출생관련 기준형의 경우 무배우자 가계의 분포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상적 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복합 기준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생관련 기준형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따라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함으로써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경향이 높으며, 대개 부모의 부양책임은 자녀들의 출생서열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므로 다른 기준들보다 출생관련 기준의 경우 무배우자 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배우자 가계일수록 장남우대를 하는 출생관련 요인을 분배기준으로 삼는 김기경·박혜인(2001)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복합기준형의 경우 유배우자가 계가 9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생존할 경우 경제력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양한 분배기준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서구에서 주로 연구 되어온 보상적 기준 및 교환적 기준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출생관련 기준이 실제로 우리 나라 중·노년기 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전에서 다뤄진 분배기준을 척도 면과 가계의 다양한 선택에 관하여 심층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상적, 교환적, 출생관련 기준 외에 다른 분배기준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한 가지 다른 분배기준이 예비조사에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사례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시 주요 기준으로 삼는 보상적, 교환적 및 출생관련 기준을 하위차원으로 하여 분배기준을 유형화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전 시기의 차이유무를 조사하였다.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네 유형의 대략적인 윤곽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첫째, 경제학적 접근에서와 같이 보상적 기준과 교환적 분배기준 중에서 어느 단일 기준에 근거하여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기준들을 복수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선행연구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그간 우리

나라의 경우 출생관련 기준에 의거한 분배기준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출생관련 기준 외에 교환적 분배기준과 보상적 분배기준도 성인 자녀에 대한 중요한 분배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문화권과 달리 아들이나 장남을 중시하는 출생관련 기준도 중요한 이전 근거가 되며, 더욱이 이 세 가지가 복합된 기준형을 선택하는 계층이 일정 비율을 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교환적, 보상적, 출생관련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한 결과 출생관련 기준형, 복합적 기준형, 교환적 기준형, 보상적 기준형으로 나뉘었으며, 이 순서대로 부모의 연령과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연령과 자녀수가 적어질수록 출생관련 기준의 수준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교환적 기준과 보상적 기준에 대한 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론케 하는 결과이다. 다섯째, 장남이나 아들을 우대 분배하는 출생관련 기준형의 경우 무배우자가 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남 또는 아들과 동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거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우대분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계의 중심적인 분배기준이 되어 온 출생관련 기준의 경우 출생관련 요인에 의한 자녀간 불균등 분배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자녀에게는 부모부양의무감이나 가계계승의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반면에 부모세대에게는 후손을 통한 노후보장과 자산 및 권력유지라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상호간 기대감의 불일치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출생관련 기준형을 선택할 부모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출생관련 기준형의 경우 무배우자가 계에서 자녀우대분배와 우대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한다는 점과 출생관련 기준형보다 평균 연령이 낮은 계층에서 교환적 분배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기준형과 교환적 기준형이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로부터 부모를 부양한 자녀들의 상속권리를 입법화함으로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와

가족해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효도상속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1998년부터 도입된 효도상속제는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부양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자녀에게 자기상속지분의 50%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지만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물질적인 관계로 해결하려는 면에 대한 반대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의 분배기준을 통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의 성향은 효도상속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우리 나라의 경우 세대간 이전이 빈번할 뿐 아니라 이전규모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소득의 편중으로 인한 부의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계의 현실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었던 분배기준이 출생관련 기준임을 비추어 볼 때 보상적 기준형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일정부분 확인됨으로서 세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해 소득균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향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이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분배기준 유형변화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보상적, 교환적 및 출생관련 분배기준에 대한 질문들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각 기준의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을 통해서 각 기준의 채택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분배기준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일종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이행되는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제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망이후까지 상속을 통해 자원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완료된 성인 자녀들을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연구대상자가 부모가 아닌 자녀의 입장으로 특성이 변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자원이전이 완료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이전 받은 분배기준을 조사한다면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의 부양정도, 자녀의 객관적인 경제적 지위,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거리, 출생관련 요인 등의 자녀변수와 부모의 건강, 부모의 특정자녀에 대한 애착과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감 등의 부모변수를 포함시켜야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액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분배기준이 조사될 수 있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후속연구에서 분배기준 유형 선택에 따른 가족 간 갈등문제를 포함한 비합리적인 문제점 등이 조사된다면 부모와 자녀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 분배기준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복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째, 본 논문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면접대상을 부분적 또는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도시가계의 대표성에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각 연령 및 소득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경, 박혜인(2001). 도시가족의 재산·제사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 김기덕, 손병돈(1995). 19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추세. *사회복지연구*, 6, 91-115.
- 김승학(1991). 한국의 소득분포와 불균등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종호(1985). 농촌가족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 문영소, 김양희(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57-171.
- 박명희, 정주원(2000).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2), 91-107.
- 박재간(1990). 노후의 재산상속과 재산관리. *노인생활*, 78.

- 배종열(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 대구 시 남자기구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1991). 노인연구. 교문사.
- 이동훈(1980). 재산상속실태와 상속법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민표(1994). 노인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정(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분담 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배(1992). 재산상속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조정문(1990). 미국내 한국계 이민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6월호), 87-112.
- 한남제(1989).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 홍영립(1997). 재산상속연구.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7월호.
- Ben-Akiva, Moshe & Lerman, S. R. (1989). *Discrete choice analysis*. The MIT Press, Cambridge : Messachusetts.
-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 of Political Economy*, 82, 1063-1094.
- Becker, G. S. & Tomes, N. (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 of Political Economy*, 87, 1153-1189.
- Becker, G. C.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assachusetts and London.
- Behrman, J. R., Pollak, R.A., & Taubman (1982). Parental preferences and provisions for their progeny. *J of Political Economy*, 90(Feb), 52-73.
-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Mutran, E. & Reitzes, C. (1984). Intergenerational support activities and well-being among the elderly: A convergence of exchange and symbolic interaction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117-130.
- Tomes, N.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 of Political Economy*, 89, 938-958.